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사업 운영지침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산업통상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5조에 의거,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사업(이하 "한-개도국사업(ODA)")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원조 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4항의 무상협력을 말한다.
2.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이하, "OECD DAC")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상국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가 정한 ODA 중점협력국가로 한-개도국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을 말한다.
3. "무상원조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시행계획서")"란, 다음 연도 한-개도국사업(ODA) 승인을 위해 장관이 외교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한-개도국사업(ODA)"이란 국개위에서 인정한 무상원조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역사업을 말한다.
 가. 에너지 정책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사업")
 나. 국제기구 협력사업(이하 "국제기구 사업")
 다.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이하 "프로젝트 사업")
5. "컨설팅 사업"이란 협력대상국의 기후변화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기후변화정책을 협력대상국에 소개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 정책 모니터링, 중점 분야 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말한다.
6. "국제기구 사업"이란 OECD DAC가 ODA 적격기구로 승인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대상국에게 한국형 정책 전수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프로젝트 사업”이란 협력대상국 온실가스저감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조사 사업 등을 말한다.
8. “사전타당성조사”란 컨설팅 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관련하여, 사업내용 적정성, 협력대상국의 사업추진 의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필요시 현지 조사를 포함한다.
9.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란, 컨설팅 사업, 프로젝트 사업 관련하여, 협력대상국의 사업요청서를 말한다.
10.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란, 국제기구 협력 사업 관련하여, 해당 국제기구가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한-개도국사업 제안서를 말한다.
11. “사업기간”이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당해 연도 한-개도국사업(ODA) 기간을 말한다.
12. “사업비”란 당해 연도 사업기간에 한-개도국사업(ODA) 수행에 소요되는 정부 출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전담기관의 교부신청에 의해 장관이 교부한다.
13. “협력사업”이란, 한-개도국사업(ODA)의 성과창출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당사자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협약”이란, 한-개도국사업(ODA)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체결하는 계약행위를 말한다.
15. “협력사업 수행기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란 한-개도국사업(ODA)을 수행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16. “협약기간”이란 한-개도국사업(ODA)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체결한 사업 기간을 말한다.
17. “협력사업비”란 한-개도국사업(ODA)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이 사업수행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18. “다년도사업”이란 총 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위원회”란 한-개도국사업(ODA)의 발굴 및 운영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민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20. “사후관리”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발생품에 대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관리·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정산”이란 사업수행기관이 집행한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2.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한-개도국사업(ODA)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 2 장 사업의 추진 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한-개도국사업(ODA)의 기획·선정·관리·심사·사업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연도 한-개도국사업(ODA)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무상원조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협력대상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에 관한 사항
5. 협력대상국 및 국제기구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사업공고/접수/평가/선정/협약체결 등)
7. 사업수행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실태점검/사업비지급·관리·정산 등)
8.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관리·분석·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한-개도국사업(ODA)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예산의 일부를 제42조의 간접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약체결에 의하여 한-개도국사업(ODA)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기관·대학교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2. 협력사업 수행 및 전담기관 협력
3. 협력대상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시 회의록 작성
4. 협력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협력사업 추진실적·성과 관리, 활용 및 결과 보고
6. 협력사업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제출
7.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8. 협력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전담기관의 활동 지원
9.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진도점검
10. 참여기관의 관계법령 및 본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11. 본 지침에 따른 각종 조사, 자료제출 등의 성실한 이행
12. 관계법령 및 본 지침의 준수

제6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한-개도국사업(ODA)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대학교 등을 말하며, 주관기관과의 약정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한-개도국사업(ODA) 참여확인서 제출
2. 주관기관과 협력사업 공동수행 및 전담기관 협력
3. 주관기관의 협력대상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시 회의록 작성 협력
4. 협력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주관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성과 관리, 활용 및 결과 보고 협력
6. 주관기관의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협력
7.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8. 협력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전담기관의 활동 지원
9. 본 지침에 따른 각종 조사, 자료제출 등의 성실한 이행
10. 관계법령 및 본 지침의 준수

②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제출 및 사업비 반환 등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7조(사업수행책임자) ① 수행책임자는 협력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사업 책임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협력사업 계획서의 작성
2. 협력사업 선정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발표
3. 협력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4. 협력사업 수행과정 감독 및 조정
5. 협력사업의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차보고서, 사후관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6. 협력사업 수행 결과의 사후관리
7. 전담기관의 협력사업 성과홍보회 참가 및 발표
8. 기타 협력사업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협력

② 참여기관 책임자는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 3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한-개도국사업(ODA)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개도국사업(ODA)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다음연도 신규 컨설팅 사업 및 국제기구 사업 확정
2. 다음연도 신규 프로젝트 사업 확정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한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계속사업 연차평가, 종료사업 최종평가 등
2. 문제사업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사업의 발굴, 계획 수립 및 승인

제10조(사업의 발굴) 전담기관은 한-개도국사업(ODA)의 신규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 협력대상국 및 국제기구 대상 수요조사
3. 국내 유관기관 및 기업, 국제기구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4. 전담기관으로 접수된 수원요청서에 기반을 둔 사전타당성 조사
5.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전타당성조사) 전담기관은 컨설팅 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무상원조사업 계획수립·제출) 전담기관은 매년 초 다음 연도 무상원조사업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 수립) ①전담기관은 국개위에서 승인한 한-개도국사업(ODA)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장관에 보고하고 사업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5 장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제14조(사업통합공고) 장관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해당연도의 한-개도국사업(ODA)에 대해 통합공고를 해야 한다.

제15조(내역사업공고) 전담기관은 내역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6조(협력사업의 신청 및 접수) 한-개도국사업(ODA)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담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17조(협력사업계획서 평가) ① 전담기관은 협력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18조(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제19조(사업수행기관 선정의 취소)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2. 사업별 모집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6 장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제20조(협약의 체결)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업 신청자에게 협약 체결을 안내해야 한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협약 변경 시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22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중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2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원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장 협력사업 착수 및 양해각서 체결

제23조(협력사업 착수)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과 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양해각서 등 체결) ① 전담기관은 협력대상국 및 국제기구와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세부사항을 담은 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 8 장 협력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25조(협력사업비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한-개도국사업(ODA) 승인 후 장관에게 당해 연도 사업비 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 및 국제기구에 협력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6조(협력사업비의 계상) ① 사업수행기관은 협력사업 수행경비를 인건비, 직접사업비 비목으로 계상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은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의 협력사업비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사업비의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다른 자금과 분리해 별도 관리해야 하고, 승인받은 목적외 사업에 사용 할 수 없고, 위반시 전담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협력사업비의 사용) 협력사업비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협력사업비의 이월) 이월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협력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사업수행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위반시 전담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장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31조(협력사업 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진도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장관에 보고 후, 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중단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 최종평가) ①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최종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다년도 협력사업 연차평가) 전담기관은 연차보고서 평가 및 제재조치를 제32조에 준해 실시한다.

제34조(협력사업 결과 확정) 전담기관은 적정 평가된 최종보고서를 협력사업의 결과보고서로 확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 성과활용) 전담기관은 적정 평가된 사업에 대해 협약기간 종료연도로 부터 3년간 매년 사업수행기관에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협력사업 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은 협력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사업 성과분석)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내역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전담기관 소속 직원, 제8조 및 제9조의 위원은 사업수행기관의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유 발생시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39조(협력사업 결과물의 소유) 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소유한다.

② 장관은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시 유무상으로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제40조(사업 결과보고)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매년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장 사업 제재 및 지원금 환수

제41조(제재조치) ①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대상 및 제재조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②사업수행책임자는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고 제재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재사유	조치사항	제재대상
제27조	·사업비 입출금 단순오류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사업수행기관 귀책사유 해당여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 결정 1. 주관기관 및 사업수행책임자 2. 참여기관 및 사업 참여자 3. 기타 관련자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동사업 참여제한(1~5년이내) ·지원금 환수(면제/일부·전액)	
제30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정산회수금 미반납 등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동사업 참여제한(1~5년이내) ·지원금 환수(면제/일부·전액)	
제31조	·진도보고서 제출 지연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진도보고서 미제출, 사업 계속수행 불가능 등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동사업 참여제한(1~5년이내) ·지원금 환수(면제/일부·전액)	
제32조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사업수행결과 불량, 사업의 불성실한 수행 등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동사업 참여제한(1~5년이내) ·지원금 환수(면제/일부·전액)	
제33조	·연차보고서 제출 지연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사업수행결과 불량, 사업의 불성실한 수행 등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동사업 참여제한(1~5년이내) ·지원금 환수(면제/일부·전액)	
제38조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해당조항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동사업 참여제한(1~5년이내) ・지원금 환수(면제/일부·전액)	
기타	・과제수행 포기 및 지침/가이드라인/협약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 ・동사업 참여제한(1~5년이내) ・지원금 환수(면제/일부·전액)	

제42조 (지원금 환수)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정산 회수금 환수 통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 지체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유권해석 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이견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 11 장 보칙

제44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장관은 전담기관이 사업기획, 평가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 운영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간접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자료보관 및 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정산, 회계감사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전담기관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